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9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5일

발 의 자: 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성연, 서상열, 송경택, 옥재은,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0명)

1.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3호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정비사업 중 기존주택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 및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정비사업 예정지 인근에는 통학로나 학교시설이 있어 보다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음.
- 또한 대규모 주택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먼지와 지반 붕괴 우려, 소음 등 인근 학교 및 통학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 단계부터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정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주택의 철거 시 인근 학교와 통학로 등지에 안전관리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인근지역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노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기존 안전대책 내용 외에 통학로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안 제26조 제2항)
- 나. 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개정안 내용을 삽입함.
- 다.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3. 통학로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p> <p>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u>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 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26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p> <p>① ----- ----- ----- ----- ----. <u><후단 삭제></u></p> <p>② <u>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u> 2. <u>비산먼지·소음·진동 등 방지대책</u> 3. <u>통학로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u>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조제2항은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 내용에 통학로를 비롯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